

-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

노 사 합 의 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군산의료원지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임금피크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정년연장형(정년 55세, 57세)과 정년보장형(정년 60세)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그 대상은 의사직 및 계약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하되,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기본급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150% 이하 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임금의 감액은 정년퇴직 3년전부터 적용하고, 감액률을 1년차(정년 3년전) 5%, 2년차(정년 2년전) 10%, 3년차(정년 1년전) 15%를 적용하여 감액한다.
4. 임금감액 기준은 감액률이 적용되는 해의 '평균임금' 을 말한다.
※ 평균임금은 단체협약 제55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를 준용한다.
5.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이 감액되기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6. 본 합의서 체결이후 정년 또는 임금피크제 관련한 정부정책 변경시 노사교섭을 실시하여 변경한다.
7.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조성된 절감재원은 신규직원 채용을 통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8.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의 임금은 매년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감액한다.

2015. 12. 30.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원장 김 영 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군산의료원 지부

지부장 유 윤



특별합의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군산의료원지부는 특별교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비정규직을 T/O 범위내에서 정규직화 하도록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조합창립기념일을 전일 휴무로 하되, 병원사정에 따라 대체휴무 할 수 있다.
3.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직급별 정원조정을 추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4. 근무시간내 조합활동의 대상자의 범위에 임원 및 노조전임자외에 노동조합에서 요청시 상무집행위원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임금피크 전환 3년차 직원에 대하여 업무 재조정 또는 업무를 경감하여 실행한다.

2015. 12. 30.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원장 김 영 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군산의료원지부
지부장 유운재

